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오진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
------------	------

발의년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오진아·김수진·김순금  
이필례·장영숙의원  
(5명)

###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라.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함(안 제16조)
- 마.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
- 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4조)

- 아.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 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차.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6조)
  - 타. 성평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제46조)

### 3. 제정근거

- 가.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0789호, 2011.12.8 시행) 제5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1046호, 2012.3.16 시행) 제3조

#### 4. 조례안 : 불임

## 5. 예산조치 : 필요

####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3. 1. 10 ~ 1. 15(제출된 의견 없음)  
나.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불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적 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성차별 예방 및 개선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5. 여성의 권리 및 복지 증진
6.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7.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9.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10.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11. 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12.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13.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2.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7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9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비혼가족 등 다양한 유

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등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친화적 도시조성)**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

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여성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여성주간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4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성평등촉진에 협력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8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 제5장 성평등기금

-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5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4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복지마포

## 마포구



수신자      마포구의회 의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 송부

1. 마포구의회-183(2013. 1.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의견을 송부합니다.

붙임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한석구

여성정책팀장

김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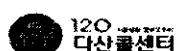
가정복지과장

01/15  
윤봉숙

협조자

시행      가정복지과-1799      ( 2013.01.15. ) 접수      마포구의회-251      ( 2013.01.16. )

우 121-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http://www.mapo.seoul.kr  
전화 02)3153-8922 /전송 02)3153-8949      / bdhsg76@mapo.go.kr / 공개



120  
다산풀센터

<사는 구는 달라도 번호는 하나! 120>

<앞으로는 집에서 「민원 24」로 처리하세요!>



##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서

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동 기본 조례안
발의 의원	오진아 의원 외 4인
소관부서	가정복지과
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	복지도시위원회, 2013. 1. 17 상정 예정
사전보고 단계	
검토의견	조례 제정에 동의함
예산편성현황	소요 예산 4,060천원을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 위원회 위원수당 70,000원×15명×4회×70% = 2,940천원 심의회 위원수당 70,000원×4명×4회 = 1,120천원